

## [별첨] 컨소시엄 합의서 발췌

### 제11조 (탈 퇴)

- ① 본 합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거 공동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지급기한 또는 지급 불이행의 치유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당사자 및 본 합의서 제14조 ①항(2)의 Closing Date 전까지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당사자는 본 합의서 다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, 대표사에게 탈퇴의사를 서면 통지하여 본 합의서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, 대표사의 경우에도 대표사 아닌 당사자에게 탈퇴의사를 서면 통지하여 본 합의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. 이 때 탈퇴일자는 탈퇴의사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.
- ③ 탈퇴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 탈퇴한 일자 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 일자('탈퇴일') 이전에 본 합의서에 따라 승인된 사업예산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이러한 일자 이전에 승인된 사업예산 내에서 본 합의서에 따라 탈퇴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했던 참여지분만큼 비용을 부담하되, 탈퇴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부담의무는 탈퇴당사자를 제외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. 본 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, 탈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함은 본 합의서에 따라 승인된 비용 전부가 아니라 탈퇴당사자의 탈퇴일 시점까지 자문사들의 용역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.
- ④ 탈퇴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존재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및 배상 또는 보상책임 등에 대해 탈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진다. 단, 탈퇴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참여에 따르는 본 사업 지분 인수 대가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탈퇴를 이유로 타 당사자는 탈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, 기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- ⑤ 탈퇴 당사자는 탈퇴일로부터 본 합의서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- ⑥ 탈퇴 당사자는 탈퇴를 이유로 자신의 사업비용부담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, 기타 장래의 수익청구권 등 배제시점 이후에

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 자신의 사업비용 지급액 등 (사업비용 사용기간이 미경과한 경우와 사업비용의 목적을 미달성한 경우 포함)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⑦ 탈퇴일에, 탈퇴 당사자의 참여지분은, 운영위원회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다른 당사자들의 참여지분 전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참여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다른 당사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무상 이전된다. 탈퇴 당사자는 자신의 참여지분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한다.
- ⑧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탈퇴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는 탈퇴나 탈퇴간주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(경쟁금지), 제11조 제3항(탈퇴당사자의 지불의무), 제12조 (비밀유지), 제13조 (대외보도) 및 제17조(준거법 및 분쟁해결)의 의무를 본 합의서에 각각 규정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.
- ⑨ 대표사가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공사가 대표사의자문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, 공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자문계약을 미승계할 경우 대표사는 이에 대한 각 자문사의 승인여부에 관계 없이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사는 제3조에 따른 최종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탈퇴일까지 발생한 실제 비용을 정산하며, 이에 대하여 공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.